내과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본 규칙은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내과 분과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자격)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근 5년간 분과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평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단, 만 60세 이상은 평점 취득 및 갱신관련 의무를 면제하나 반드시 기간 내 자격갱신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3 조 (자격갱신의 방법)

1.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각 분과위원회에서 개별심사 후 그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증을 갱신 교부한다.
 갱신료를 소정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격갱신을 무효로 한다.
2.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 등 일신상의 사유로 자격갱신을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내과분과전문의 자격갱신 연기사유서)와 증빙서류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자격갱신 연기기간 동안 게재된 논문은 인정하나, 연기기간 중 취득한 연수평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 4 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내과분과전문의 자격갱신 신청서)에 의한 아래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해 8월말까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증 사본
2. 별지 제10호 (연수평점 기록지)
3. 별지 제11호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제 5 조 (연수교육, 학술대회 및 논문 평점)

1. 연수교육, 학술대회 및 논문 평점의 인정한계는 아래와 같다.
 1) 연수교육
 (1) 1시간당 1평점을 인정하고, 1일 교육 상한점수는 6평점으로 한다.
 (2) 참석에 대한 증빙은 대한내과학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이수내역확인서를 제출한다.
 2) 학술대회 (정기학술대회)
 (1) 인정학회는 1일 2평점, 관련학회는 1일 1평점을 인정한다.
 (2) 참석에 대한 증빙은 대한의사협회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내역확인서 사본을 제출하고, 국제학회는 명찰 또는 참석확인증을 제출한다.
 3) 논문
 (1) 별표 2 (논문평점 인정 학술지)에 따른 논문(원저, 증례, 종설)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원저, 증례, 종설 외에 논문형식(method, results, discussion, reference 등)을 갖출 경우 검토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2)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10평점, 공저자는 4점으로 계산한다.
 종설, 증례 및 그 외 분과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논문형식은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한다.

제 6 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1.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2년간 자격갱신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2. 2년간 신청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 받을 수 있다.
 단, 자격갱신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은 면제하고, 구술시험으로 각 분과위원회에서 평가한다.

제 7 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1.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3년간 자격갱신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2.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자격갱신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은 면제하고, 구술시험으로 각 분과위원회에서 평가한다.

제 8 조 (운영 세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부칙)

1. 본 규칙은 199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칙은 1998년 2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칙은 2001년 1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칙은 2003년 11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칙은 2006년 11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규칙은 2012년 1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본 규칙은 2018년 1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본 규칙은 2018년 3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본 규칙은 2021년 9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본 규칙은 2022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본 규칙은 2024년 6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